

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장순원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8. 3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65호로 2021년 7월 13일 장순원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(법률 제17344호, 2021.6.1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,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나.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·시행 조항 신설(안 제4조)
- 다.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운영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·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1. 8. 20. ~ 8. 24./ 5일 간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, 법률의 제명 및 용어,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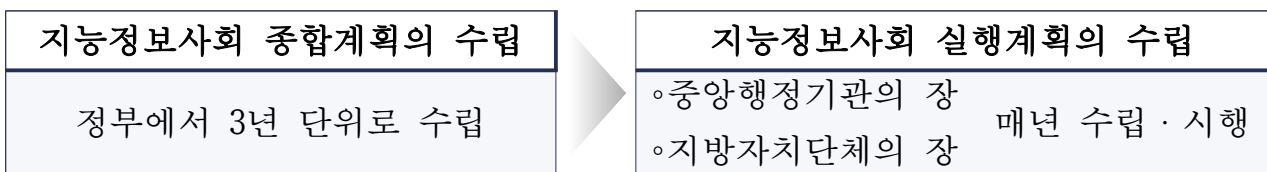
○ 상위법 개정 이유는

-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, 데이터,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,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.
-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·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

강화하려는 것임. 또한,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상위법령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.
-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,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,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 용어들을 상위법 정의에 따르도록 생략하였음.
-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·시행으로 조문을 개정함. 이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실행계획 수립·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바, 이를 반영한 개정으로 보임.


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5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임명하게 하고, 수행 업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.

-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적으로 조정·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제20조(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) 및 제27조(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) 등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음.
-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음. 이는 △정보화 → 지능정보화 또는 지능정보사회, △인터넷중독 →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, △정보통신서비스 → 지능정보서비스, △정보통신제품 → 지능정보제품 등으로 용어 및 관련 표현을 정비함.

○ 검토결과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고,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능정보화기본법

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~ ⑥ 생략

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 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